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분야 특허 컨소시움 기술료사업계약서

(주관기관, 참여기관간)

O 사업명 :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특허 컨소시움

O 계약기간 : 2004. 12 ~ 2006. 11까지(2년 뒤 평가 후 5년까지 연장가능)

O 사업기간: 2004. 12 ~ 2005. 11까지

O 사업비 (1차년도)

- 총 개발 사업비 : 600,000천원

- 정 부 출 연 금 : 300,000천원

- 민 간 부 담 액 : 300,000천원(현금: 200,000천원, 현물: 100,000천원)

※ 현금: 대기업 1억, 중소장비업체 및 연구기관 1억

0 사업 책임자

- 소속 : 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

- 직위 : 부장

- 성명 : 박보현

0 계약당사자

(갑) 사업 주관기관 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 회장 고석태

(을) 사업 참여기관 (주)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장호승

위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해외선진경쟁사 핵심특허분석 및 특허분쟁대응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특허컨소시움 구성 및 운영 사업에관하여 (갑)과 (을)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컨소시움 구성 및 사업운영 목표)

국내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수급기업과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으로, 해외 선진경쟁사 핵심특허 분석과 특허분쟁대응력 강화를 위한 컨소시움을 구축하고, 특허전담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인 특허분석지원, 국제적특허분쟁 연구 및 국가성장 동력산업과 특허 확보 전략의 연계 등, 제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.

제 2조 (컨소시움의 운영)

(갑과 을)은 해외 선진경쟁사 핵심특허 분석과 특허분쟁대응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특허컨소시움 운영규정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3조 (컨소시움 구성 운영비의 지급)

- (1) 정부와 (을)은 다음과 같이 컨소시움 운영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계약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 - (가) 정부출연금:회원사출연금=50:50
 - (나) 사업기간: 2004년 12월 ~ 2005년 11월 (1년)
 - (다) 참여기관 현금분담금 지급 기준: 대기업 16,667천원, 전공장비업체 5,000 천원, 그 외 장비업체 1,000천원, 연구기관 3,000천원
- (2) (을)은 해외 선진경쟁사 핵심특허 분석과 특허분쟁대응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특허컨소시움 구성 및 사업운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, (다)항의 분담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현금분담금을 (갑)에게 지급하여 사용관리토록 한다.
- (3) (갑)은 해외 선진경쟁사 핵심특허 분석과 특허분쟁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급받은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특허컨소시움 운영비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기술개발운영요령(이하 "운영요령"이라 한다)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4조 (컨소시움 운영 결과보고)

- (1) (갑)은 매년 (최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)를 연구관리지침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 회원사에 배포한다.
- (2) (갑)과 (을)은 협의에 의해 컨소시움 운영방법 및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할 수 있다.

(3)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특허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(갑)은 (을)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사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다.

제 5조 (관계자료의 제출 등)

(을)은 기업비밀 및 영업에 현저한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(갑)의 특허 분석 자료요청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특허컨 소시움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조 (계약의 변경)

(갑) 및 (을)의 협의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승인으로 본 계약의 내용과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특허 컨소시움 구성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7조 (계약의 해약)

- (1) (갑) 과 (을)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- (2) (갑)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(을)과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 - (가) 컨소시움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다른 과제수행으로 성취되어 본 컨소시 움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
 - (나) 반도체/디스플레이 장비 특허 컨소시움의 활동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 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(다)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컨소시움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(3)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(갑)은 기수령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컨소시움 운영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하며, 정부출연금 잔액은 주관기관이 환수하고 참여기업분담금 잔액은 참여기업이 환수한다.

제 8조 (컨소시움 운영 중 발생한 발생품의 귀속 등)

당해 컨소시움 사업 과제 수행 중 발생된 보고서 및 자료는 (갑과 을)의 소유로 한다.

제 9조 (사업운영 성과의 활용)

(갑)은 본 사업의 성과를 컨소시움 참여 회원사와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 때 회원사와 협의 없이 회원사가 아닌 기타의 자와 운영성과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0조 (컨소시움 운영비 징수)

(을)은 운영요령의 해당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기업분담금 (현금포함)을 매년 사업 시작 전 2주일 이내에 (갑)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관계법령의 준수)

(잡) 및 (을) 등은 본 해외 선진경쟁사 핵심특허 분석과 특허분쟁대응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/디스플레이 장비 특허 컨소시움을 구성 운영 하는데 있어서 운영 요령 등을 준수하고, 본 계약에 없는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 만일 (갑) 및 (을)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운영 요령을 위반하였을 경우, 사업책임자는 (갑) 및 (을)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컨소시움 가입 회원사의 의견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제 12조 (기타)

- (1) (갑) 및 (을)은 본 컨소시움 구성 및 운영의 성과로 얻어지는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사업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(2)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거나, 회원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본 계약서상의 내용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13조 (해석)

- (1)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(산업자원부장관)의 해석에 따른다.
- (2)본 계약서는 (2)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(갑)과 (을)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, 갑은 산자부장관과 협약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.

첨부: 기술료사업계획서 1부 기술료사업 사업비집행기준 1부

2005년 5월 12일

(갑) 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	(을) (주)아이피에스
회장 고석태	대표이사 장호승
서명	서명

기술료사업사업비집행기준

1. 관련 근거

- 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요령 제21조(지급 기술료 관리·사용)
-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25조(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)

2. 목 적

○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

3. 적용기준

○ 상기 [1. 관련근거]를 적용하되 관련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근거간의 내용 이 상충시 본 기준 적용

4. 사업비 사용 및 인정 기준

가. 일반 원칙

- 1)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- 2) 5만원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(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)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참여기관이 생산 판매 중인 견품, 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한다.
- 4)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. 단,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5) 현물의 사용은 해당기관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- 7) 사업운영비, 기관공통지원경비는 협약시 인정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8) 직접사업비는 다른 세부비목으로 변경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9) 예금이자는 비목별 변경사용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.

나. 비목별 세부 원칙

- 1) 인건비
 - 가)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워처

징수부,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- 나) 외부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, 총괄전담기관 요구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)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지급시 총괄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) 직접사업비

- 가) 당초 협약서상의 변경전후 구입가격이 3,000만원 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은 총괄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동일 기자 재 및 시설의 규격, 제작회사,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의 변경구입은 승인이 불필요하다.
- 나) 기술개발사업으로 구입한 기자재의 임차비는 불인정한다. 단, 기완료된 과제 중 정액기술료를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전담기관에 납부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.
- 다)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한다.

3) 간접사업비

- 가)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, 해당기관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)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, 목적, 출장지, 출장인원,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.
- 다)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.
- 라) 강사료, 원고료, 번역료,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.
- 마) 학회활동의 경우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학회가 입비, 연회비 등 개인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한다.
- 바) 회의비는 장소임대료, 음료·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(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)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4) 위탁사업비

위탁사업비는 각 비목별로 상기 1) 내지 3)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한다.

<u>영</u> 수 증

㈜아이피에스 귀하

	사업자	214-82-07952		
	등록번호			
공	상호	사단법인 한국	1.1	
급	(법인명)	디스플레이장비	성	(雪)雅幹(10
자	(1120)	재료산업협회	명	
	소재지	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5-7		
		선일빌딩 6층		
작성일자		금 액		
2004. 12.29		금오백만원정(₩5,000,000원)		

내역 :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분야 특허 컨소시움 참여기업분담금 (회사)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

영수자 최연식

